

**2013학년도 제7차**  
**<제310차 이사회 회의록>**

2014. 02. 06.

**학교법인 대우학원**

# 학교법인 대우학원

## 2013학년도 제7차

### 〈제310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1 인	2 인
재적임원	11 인	2 인
참석임원	9 인	2 인

1. 일 시 : 2014.2.6(목) 07:30 ~ 11:10 (회의소집 통보일 : 2014년 1월 29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 3. 임원 출·결 사항

#####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윤성복, 문길주, 주인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홍, 김선용 (9인)
- 감사 : 전성훈, 배홍기 (2인)

##### ◎ 결석임원

- 이사 : 안재환, 신희택 (2인)

####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소의영, 교무처장 박영동, 기획처장 김민구,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예산팀장 조경숙 (5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이종화, 기획처장 류지호 (2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심지훈 (2인)

####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한 분 중 아홉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 및 아주자동차대학의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고가 있겠습니다.

( 김민구 기획처장, 이종화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이 각각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7. 심의안전

상임이사 이영현 : 제310차 이사회 심의 안전은 학법대우 제13-310호(2014.01.29)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동의(안), 의안 제2호 2013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의안 제3호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4호 아주자동차대학 구축물 멸실 및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의안 제5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의안 제6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7호 아주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의안 제8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9호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10호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11호 아주대학교 특별임용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12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동의(안), 의안 제13호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 의안 제14호 동아리실 1·2·아향식당 멸실처분 및 카페테리아(가칭) 신축 승인(안), 의안 제15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기채 승인(안), 의안 제16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의안 제17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18호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의안 제19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의안 제20호 교육용기본재산(장례식장 신축부지) 용도변경 승인(안), 의안 제21호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 의안 제22호 수익용기본재산(군산빌딩) 처분 승인(안), 의안 제23호 2013학년도 법인회계 제3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의안 제24호 2014학년도 법인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25호 2014학년도 상근임원 보수책정 승인(안) 등 25개의 안전을 상정하였습니다.

### 8. 심의내용

#### 제 1 호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동의(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동의(안) 발의.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종화** :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임용 대상자는 자동차계열에 산학협력중점 부교수 1명이며, 재임용 대상자는 자동차계열 조교수 2명입니다. 다음으로 전임교원 승진임용 대상자는 심사대상 11명 중 1명만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임용을 제청하였으며, 해당 교원은 박명호 부교수로서 2014.3.1부터 정년까지의 교수로 승진임용 하고자 합니다. 신규·재임용·승진임용 제청자의 교원업적평가, 연구실적 및 이력내용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임용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1명의 신규임용 및 2명의 재임용, 1명의 승진임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임용 동의 내용**

**가. 신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 용 기 간
자동차계열	김 영 우	부교수	2014.3.1 ~ 2017.2.28 (3년)

- 이상 1명 -

**나. 재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 용 기 간
자동차계열	문 병 구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자동차계열	한 영 민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 이상 2명 -

**다. 승진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 용 기 간
자동차계열	박 명 호	교수	2014.3.1 ~ 정년

- 이상 1명 -

< 간서명란 >

이사장

최 홍

이사 신 상 협

이사 이 영 현

제 2 호 2013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이 사 장 : 2013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종화 : 아주자동차대학의 2013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편성은 2013학년도 등록금 수입 감소,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국고지원장학금 수입의 증가, 조교·초빙교원 퇴직금 및 조교급여, 임시직 인건비 등의 인건비 감소, 전기수도료 인상·장애 인고용부담금 증가·WCC 공동홍보 증가로 인한 일반관리비 증가, 국고사업을 통한 지출로 일반관리비(회의비, 출장비, 학생지원비 등)를 절감하는 예산 반영으로 전체 규모는 제1차 추경예산 대비 9,059천원이 감소한 10,735,04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추경 예산(안)의 자세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종화 아주자동차대학총장이 추경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전 성 훈 :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는 등록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 등 운영수입 증(감)에 따른 지출예산 조정 및 지출예산, 자산매입비, 차기이월자금을 절감하여 6억원의 기금을 적립한 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교육외 수입에 예금이자수입이 49.5천원이 증가한 부분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 주 인 옥 :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을 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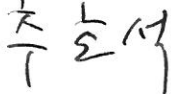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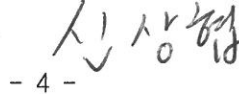

이 사 장 : 그러면 2013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3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관 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액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수입	등 록 금 수 입	5,707,700	5,921,261	-213,561
	전입및기부수입	1,503,331	1,348,331	155,000
	교 육 부 대 수 입	711,460	711,460	0
	교 육 외 수 입	280,979	231,477	49,502
	미사용전기이월자금	2,531,570	2,531,570	0
	계	10,735,040	10,744,099	-9,059

< 간서명란 >

이사장  이사  이사 

지출	보 수	3,312,667	3,364,087	-51,420
	관 리 운 영 비	2,171,407	2,328,416	-157,009
	연 구 학 생 경 비	2,350,226	2,249,226	101,000
	교 육 외 비 용	110,000	110,000	0
	예 비 비	20,000	20,000	0
	투자와기타자산지출	600,000	0	600,000
	고정자산매입지출	332,988	698,589	-365,601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837,752	1,973,781	-136,029
	계	10,735,040	10,744,099	-9,059

### 제 3 호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종화 :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자금예산(안) 편성은 등록금 동결에도 복학을 및 편입생 확대 등 충원을 증대 노력을 통한 등록금 수입 총액의 증가, 재학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내외 장학금 확대 등 연구학생경비의 증액, 교직원 인건비의 인상(4%), 공공요금 등을 제외한 관리운영비 지출 최소화를 위한 긴축 운영, 일반관리비(회의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를 국고지원사업 운영비에서의 우선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2014학년도 자금예산(안) 총규모는 10,160,480천원으로서 전년도 제 2차 추경예산 대비 574,56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4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의 자세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종화 아주자동차대학총장이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감 사 전 성 훈 : 아주자동차대학의 보수 인상률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4%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자금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인근 타대학 인건비 수준을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보수인상 자체에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보수 인상은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이 동결되어 등록금수입 증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타 운영지출의 감소 없이 이월자금을 보수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종화 : 교원급여의 경우 산학협력중점교원 2명의 인건비 일부는 국고 지원비로 대체되기 때문에 교원급여 총액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 평가인증기준을 맞추기 위해 상담사와 간호사 신규채용이 불가피해서 직원보수 부분에 인건비가 증가되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었습니다. 전체 운영수입 대비해서 보수총액이 40% 정도가 되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 성 복 :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4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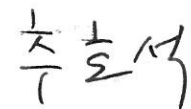
구분	관 별	2014학년도 예산액	2013 제2차 추정예산액	증 감
수입	등록금수입	5,904,761	5,707,700	197,061
	전입및기부수입	1,483,108	1,503,331	-20,223
	교육부대수입	729,400	711,460	17,940
	교육외수입	205,459	280,979	-75,52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837,752	2,531,570	-693,818
	계	10,160,480	10,735,040	-574,560
지출	보 수	3,398,007	3,312,667	85,340
	관 리 운 영 비	2,278,825	2,171,407	107,418
	연 구 학 생 경 비	2,332,361	2,350,226	-17,865
	교 육 외 비 용	60,000	110,000	-50,000
	예 비 비	0	20,000	-20,000
	투자외기타자산지출	0	600,000	-600,000
	고정자산매입지출	363,250	332,988	30,262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728,037	1,837,752	-109,715
	계	10,160,480	10,735,040	-574,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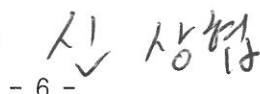
제 4 호 아주자동차대학 구축물 멸실 및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구축물 멸실 및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종화 : 먼저 구축물 멸실 처리(안)은 골프교육장 시설물과 관련하여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철탑의 노후 및 위험요소가 내재해 있고 학교 내방객들에게 미관상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멸실 처리 후 해당 부지는 실습용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정자산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간서명란>

이사장 

이사 

이사 

해당 불용자산은 총 1,060점, 취득가액 778,718,532원으로 장기간 이용으로 파손되어 수리 불가능한 기계기구와 집기비품류에 대하여 불용 처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회의 자료 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건축물 멸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불용자산 또한 감가상각이 완료된 것들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건축물 멸실 및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제 5 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이 사 장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은 권역외상센터 등 국가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 로봇수술기 할부 도입에 따른 의료외수입 증가 및 고정자산 지출 증가, 인건비 증가 및 재료비 절감 목표 미달성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속병원의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규모는 제1차 추경예산 대비 12,313,000천원 증가한 446,834,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이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하다. )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전 성 훈 :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1차 추경 대비 의료비용이 66억원 증가하여 의료이익은 66억원 감소하지만 권역외상센터 국고보조금수익 80억원이 증가하여 경상이익이 19억원 증가하고 전출금이 23억원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이 42억원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의료비용 증가는 인건비의 경우 일시금 증가(24억원)에 기인한 것이고 재료비는 재료 절감 목표 미달성(42억원)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병원 2

<간서명란>

이사장

최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차 추정(안)이 의료이익 33억원, 경상이익 193억원, 당기순이익 75억원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의료외수익 중 권역외상센터 국고보조금 및 도비 90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경상이익은 103억원, 당기순이익은 △15억원 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의료수익 목표를 달성하고 의료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국고보조금 및 도비 90억원을 제외한 실제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사 윤 성 복 : 예·결산과 관련해서 병원 운영손익은 어느 정도이고 해당 손익이 타 종합병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 박 상 일 : 설명해 주신 내용 이외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관 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액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수 입	의 료 수 입	385,400,000	385,400,000	0
	의 료 외 수 입	31,845,034	19,377,634	12,467,400
	기타고정부채수입	262,600	200,000	62,600
	차 입 금 수 입	11,483,000	11,700,000	-217,000
	기 본 금 증 가	0	0	0
	전 기 이 월 자 금	17,843,366	17,843,366	0
	계	446,834,000	434,521,000	12,313,000
지 출	의 료 비 용	333,551,600	326,600,500	6,951,100
	의 료 외 비 용	11,194,160	10,744,000	450,160
	투자외기타자산지출	5,200	0	5,200
	기타고정부채상환	40,000	40,000	0
	차 입 금 상 환	11,980,000	12,250,000	-270,000
	고 정 자 산	24,264,000	20,858,400	3,405,600
	전 출 금	41,025,040	43,261,600	-2,236,560
	예 비 비	500,000	4,960,000	-4,460,000
	차 기 이 월 자 금	24,274,000	15,806,500	8,467,500
	계	446,834,000	434,521,000	12,313,000

< 간서명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험

이사 이 영 현

## 제 6 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2014학년도 부속병원회계의 자금예산 편성은 권역외상센터 신축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지원, 수지균형으로 재정 안정성 유지를 목표로 임상과 진료운영계획에 근거한 의료수입 반영, 수입예산 목표달성과 연계한 지출계획, 불요불급한 관리비를 배제한 건축예산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속병원회계의 2014학년도 자금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2013학년도 2차 추경예산 대비 3,902,000천원 증가한 450,7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이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전성훈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은 의료수익 3,893억원, 당기순이익 52억원이 발생하는 예산(안)으로 2013학년도 2차 추경(실적) 대비 의료수익은 39억원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22억원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도비지원금 80억원을 제외한 병원의 실제 순수 당기순이익은 △28억원으로서, 이는 2014학년도에는 장례식장 운영축소(7실→임시가설 2실)로 장례식장 수익 및 임대수익 약 29억원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학년도 웰빙센터를 신축한 이후 인건비 및 관리비 등 고정비가 증가하여 의료수익대비 의료이익률이 평균 3%수준에서 1%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매년 당기순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됩니다. 향후 권역외상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인건비 및 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이 추가되어 의료수익대비 의료이익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병원에서 의료수익은 높이고 의료비용은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사 윤성복 : 자금예산서 상으로만 판단해 보면, 39억원인 의료수입 증가분에 비해 인건비 증가분이 상당히 크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에 반해 재료비는 오히려 너무 작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35.2억원 증가에 예비비까지 고려할 경우 거의 의료수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또한, 재료비의 경우도 2013학년도 추경예산에서 42.3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2014학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외형이 늘어 의료수입이 1%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비는 추경 대비 오히려 29.3억원 정도를 줄여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장례식장 폐쇄 및 축소운영 등으로 인해 의료외 수입은 많이

<간서명란>

이사장

탁승제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줄었는데 의료외비용은 3억원밖에 줄지 않아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의료원장 소의영 :** 정부의 의료정책의 변화에 따라 특진율이 80%에서 20%로 저하되고, 4인실 기본병실화에 따른 손실로 인해 의료수입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 증대에 따른 수입증가 또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인건비 등에서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증가분은 추가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아닌 대부분이 교직원 승급 및 승진에 따른 증가(19.8억원)이며, 2014학년도 명예 퇴직제도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의 경우 2013학년도에 많은 노력을 통해 약 2% 정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서 1% 정도 더 줄이도록 노력하자는 의지에서 해당 목표치를 제시하고자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료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려되시겠지만, 재료비 절감과 수입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변수는 추경에서 반영을 하더라도 본예산은 최소한 경제성장률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여야만 발전은 못하더라도 도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장 소의영 :** 2013학년도 예산 당시 말씀하신대로 의료수입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았는데 그에 따라 지출 통제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많았고 또 이를 다시 추경을 통해 줄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는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 주 인 옥 :** 2013년도 의료계의 불황 또는 관련 제도가 병원에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대형 병원들은 적자를 면치 못했고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가 될 예정입니다. 외부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하여 그에 맞게 실천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 사 장 :** 여러 이사님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201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은 승인하고, 의료수입 목표는 내부적으로 따로 작년처럼 높게 정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 사 주 인 옥 :** 이사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수적으로 편성된 자금예산(안)은 승인하되, 내부적으로 목표를 세워 이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최홍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관별	2014학년도 예산액	2013 제2차 추경예산액	증감
수입	의료수입	389,300,000	385,400,000	3,900,000
	의료외수입	23,542,000	31,845,034	-8,303,034
	기타고정부채수입	0	262,600	-262,600
	차입금수입	5,400,000	11,483,000	-6,083,000
	기본금증가	8,220,000	0	8,220,000
	전기이월자금	24,274,000	17,843,366	6,430,634
	계	450,736,000	446,834,000	3,902,000
지출	의료비용	333,980,200	333,551,600	428,600
	의료외비용	10,871,700	11,194,160	-322,460
	투자외기타자산지출	60,000	5,200	54,800
	기타고정부채상환		40,000	-40,000
	차입금상환	12,900,000	11,980,000	920,000
	고정자산	29,716,800	24,264,000	5,452,800
	전출금	42,122,700	41,025,040	1,097,660
	예비비	5,000,000	500,000	4,500,000
	차기이월자금	16,084,600	24,274,000	-8,189,400
	계	450,736,000	446,834,000	3,902,000

제 7 호 아주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의료기기, 의료비품, 일반비품,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 총 700점, 취득금액 748,845,208원의 고정자산에 대하여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처분 하고자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 이번 불용처분 자산 중에는 기존 장례식장 폐쇄 및 축소운영에 따라 신축 장례식장에서 재활용이 곤란한 장례식장 관련 일반비품 303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의 불용자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불용 자산 현황을 살펴보니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며, 비망가액으로 회계 관리하던 잔존가액을 장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큰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

<간서명란>

이사장

최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제 8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관련하여 설립 10주년과 정부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계기로 산학협력단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해야 할 시점으로 직제규정에 산학협력단의 세부 운영조직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회계 및 재무업무 확대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리팀 명칭을 주요대학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무회계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유학생의 내실있는 교육지원을 통한 국제화 강화를 위해 Ajou Foundation Program을 추진 관리할 조직으로 대외협력처 산하 지원기관으로 국제교육센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 성 복 :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주 인 옥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간서명란>

이사장

최 호 석

이사 신 상 협

이사 이 영 현

현행	개정
<p>제5조 (기구) ① 내지 ⑥ (생략)</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소속이 없는 지원기관으로 학생군사교육단, 예비군연대, 과학영재교육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li> <li>2. 기초교육대학 : 의사소통센터</li> <li>3.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li> <li>4.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li> <li>5. 교무처 : 아주서비스센터, 교직부</li> <li>6. 연구처 : 공동기기센터</li> <li>7. 학생처 : 학생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li> <li>8. 입학처 : 입학사정센터</li> <li>9. 대외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li> <li>10. 중앙도서관 : 출판부</li> <li>11. 대학교육혁신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가인증센터, 융복합교육센터, 산학연교육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li> <li>12. 종합인력개발원 : 사회진출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li> <li>13. 대학언론사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li> </ol> <p>⑧ 내지 ⑨ (생략)</p>	<p>제5조 (기구) ① 내지 ⑥ (현행과 같음)</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소속이 없는 지원기관으로 학생군사교육단, 예비군연대, 과학영재교육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지 8. (현행과 같음)</li> <li>9. 대외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 <u>국제교육센터</u></li> <li>10. 내지 13. (현행과 같음)</li> </ol> <p>⑧ 내지 ⑨ (현행과 같음)</p>
<p>제9조 (대학교본부) ① 교무처는 교육 관련 행정 및 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교무팀 및 교원팀을 둔다.</p> <p>② 연구처는 연구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연구팀을 둔다.</p> <p>③ 학생처는 학생활동 지원 및 대학문화 창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학생지원팀을 둔다.</p> <p>④ 총무처는 일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총무팀, 구매관재팀, <u>경리팀</u> 및 시설팀을 둔다.</p> <p>⑤ 기획처는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동 계획의 집</p>	<p>제9조 (대학교본부)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p> <p>④ 총무처는 일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총무팀, 구매관재팀, <u>재무회계팀</u> 및 시설팀을 둔다.</p> <p>⑤ 내지 ⑩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최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행에 대한 심사분석, 대학평가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팀 및 예산팀을 둔다.</p> <p>⑥ 입학처는 학사과정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학생선발 관련업무를 수행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입학팀을 둔다.</p> <p>⑦ 대외협력처는 국외 대학 및 기관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팀을 둔다.</p> <p>⑧ 각 처에 처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한다.</p> <p>⑨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⑩ 각 처의 팀에 팀장을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u>제11조의 2 &lt;신 설&gt;</u></p>	<p><u>제11조의 2 (이주대학교산학협력단) ① 이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u>② 이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 산학지원팀 및 산학재무팀을 둔다.</u></p> <p><u>③ 이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u></p> <p><u>④ 이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특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운영기구를 둘 수 있다.</u></p> <p><u>⑤ 이주대학교산학협력단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간사명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행

이사

이 영 현

**제 9 호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교무처장 박영동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09차 이사회 정관 개정에 따라 규정으로의 위임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을 교원인사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매학기 교원 충원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원하지 못하는 학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 우수하고 검증된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대부분 공개채용으로 선발하던 교수임용방식을 능력위주의 특별채용 및 상시채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 개정을 통해 특별채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현재 아주대학교 교원 연구년제와 관련하여 현재 복무기간 6년에 연구년 12개월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실적이 탁월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교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무기간 3년에 연구년 6개월을 허가하는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 6년 12개월 연구년제의 경우 연구활동이 활발한 교원들이 최신의 학문을 수용하고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 지나치게 길어 타 대학 교원에 비하여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들의 국내외 전공분야의 학술연구 및 연수활동을 촉진하여 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조(임용기간) 교원의 임용기간은 대우학원 정관	제6조(임용기간) <u>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u>

< 간서명란 >

이사장 **추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명현**



현행	개정
제48조에 따른다.	<p>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li> <li>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li> <li>3. 조교수 : 3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li> </ol>
<p>제16조(특별채용) ① <u>탁월한 학문적 업적이 있거나 사계의 권위자인 경우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학장,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 할 수 있다.</u></p> <p>② 특별채용 교원의 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교원신규 임용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p>제16조(특별채용) ① <u>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학장,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li> <li>2. 국내외의 석학 및 중견학자</li> <li>3. 국내외 학·연·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자</li> <li>4. 외국인</li> </ol> <p>② (현행과 같음)</p>
<p>제33조(연구년) ① 본 대학교 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u>조교수 이상</u>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을 시행하며,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교원에 한한다.</p> <p><u>&lt;신 설&gt;</u></p> <p>② 연구년 산정을 위한 복무기간은 교원으로서 근무한 직전 연구년 종료일(신규임용 교원의 경우에는 신규임용일)로부터 다음 연구년 개시일까지로 한다. 단, 무급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p> <p>③ 연구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3조(연구년) ① 본 대학교 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임교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lt;삭 제&gt;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을 시행하며, 정년퇴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 교원에 한한다.</p> <p>② <u>연구년은 12개월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복무기간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전향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이 탁월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6개월 연구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장 신상협

이사 이영현

제 10 호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교 교원인사 규정 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교원의 임용기간 및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차 이사회에서 정관 제48조 교원임용기간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임교원 임용기간의 세부사항을 규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특별채용 자격기준의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수인력 채용대상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선 용 :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의 1 <신 설>	<p>제4조의 1 (교원의 임용기간)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li> <li>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li> <li>3. 조교수 : 3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li> </ol>

<간서명란>

이사장 탁승제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제14조(특별채용) ① <u>탁월한 학문적 업적이 있거나 사계의 권위자인 경우에는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대학(원)장이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천하며 총장이 이사회</u>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p> <p>② 특별채용 교원의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특별채용) ① <u>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원장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자</li> <li>2. 특정 임상분야의 권위자</li> <li>3. 국내외 학·연·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경력을 쌓은 자</li> <li>4. 외국인</li> </ol>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제 11 호 아주대학교 특별임용교원인사규정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특별임용교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교무처장 박영동 : 본 안건은 특별임용교원 중 객원교수의 자격 및 연구교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 타대학 교원으로 한정된 객원교수의 자격을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가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특정영역에서 업적이 있는 자로 확대하여 각 기관과 교류협력 활성화와 현장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교수와 관련해서도 본교 교수로서 정년퇴직한 전임교원 중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인사에 대해 연구역량을 지속시키기 위해 정년이 지난 교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교수 자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력이 탁월한 교원의 경우 연구를 활발하게 진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 제공과 학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년이 지난 연구교수와 기존교수와의 연구협업을 통한 연구활성화를 통해 학내 연구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험

이사

이 영 현

이 사 신 상 협 : 정년 후 연구교수와 관련해서 경희대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연구실적이 전체 교원의 5% 안에 들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임용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아주대의 경우 평가등급을 S, A, B, C, D로 나누어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A등급(10%) 수준을 유지하는 교원이 대상이 됩니다.

이 사 박 상 일 :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특별임용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특별임용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종류 및 직위) ① 특별임용교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석좌교수 :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망이 있는 인사로서 외부기금 또는 특별재원으로 임용된 교원 2. 대우교수 : 학생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3. 연구교수 : 특정 연구과제 수행 또는 연구소 운영 등 연구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4. 강의교수 : 학생교육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5. 객원교수 : 타 대학 교원으로 일정기간 학생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6. 겸임교수 : 공공기관,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분야의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산업체의 전문가로서 학생교육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 7. 초빙교수 : 학계 또는 사회의 저명인사로서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임용된 교원 8. 산학협력교수 :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	제2조(종류 및 직위) ① 특별임용교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지 4. (현행과 같음) 5. 객원교수 : <u>국내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특정영역에서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생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일정기간 임용된 교원</u> 6. 내지 8. (현행과 같음)

< 간서명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협 이사 이 영 현

현행	개정
<p>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자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p>	
<p>제15조(자격)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1. 본 대학교의 특정 연구과제 또는 연구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p> <p>2. 외부 연구기금 등에 의하여 본 대학교 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15조(자격) ①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1. 내지 2. (현행과 같음)</p> <p>3. <u>본 대학교 퇴직교원으로 연구능력이 탁월하여 본 대학교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u></p> <p>② 제1항 제3호에 의거한 연구교수 자격 및 임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제23조(자격) 객원교수는 <u>타 대학 교원으로</u> 본 대학교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협약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학생교육과 연구활동을 <u>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u></p>	<p>제23조(자격) 객원교수는 <u>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특정영역에서 업적이 있는 자로 하며,</u> 본 대학교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협약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학생교육과 연구활동을 <u>수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u>(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 제 12 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동의(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동의(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본교 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임용 대상자는 총 17명으로 교수 2명, 부교수 1명, 조교수 9명의 전임교원과 부교수 1명, 조교수 4명의 비정년외국인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임용 대상자는 총 2명으로 대우교수 1명, 대우부교수 1명의 특별임용교원입니다. 승진임용 대상자는 총 20명으로 이 중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이 14명,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이 3명, 특별승진 3명입니다. 특별승진과 관련하여 해당 교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원은 강의시수, 강의평가, 연구실적 등 임용기간 활동 실적이 탁월한 분들로서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이 2명,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이 1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재임용·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별첨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 성 복 : 전체적으로 교원의 신규·재임용·승진임용 심사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본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17명의 신규임용 및 2명의 재임용, 20명의 승진임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이 사 장 : 다음으로 의료원 임용 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의료원 교원 신규임용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소아청소년과학교실, 흉부외과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안과학교실 소속의 조교수 각 1명입니다. 다음으로 승진임용 대상자는 총 20명으로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15명,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5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별첨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아주대학교의료원 임용 동의(안)에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주 인 옥 : 각 임용대상자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원 신규·승진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4명의 신규임용 및 20명의 승진임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동의 내용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험 이사 이 영 현

가. 신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교	약 학 과	박 영 준	교 수	2014.3.1 ~ 2017.2.28 (3년)	
	정치외교학과	김 홍 규	교 수	2014.3.1 ~ 2017.2.28 (3년)	
	에너지시스템학과	김 진 호	부교수	2014.3.1 ~ 2017.2.28 (3년)	
	환경공학과	최 권 영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전자공학과	양 회 석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물리학과	이 상 운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생명과학과	송 영 훈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경영학과	백 연 정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문화콘텐츠학과	장 예 빛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경제학과	김 태 봉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에너지시스템학과	박 희 준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기초교육대학	홍 성 연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전자공학과	Thaiyan Mahalingam	부교수	2014.3.1 ~ 2016.2.29 (2년)	
	기계공학과	Dhaneshwar Mishra	조교수	2014.3.1 ~ 2015.2.28 (1년)	
	산업공학과	Limei Peng	조교수	2014.3.1 ~ 2016.2.29 (2년)	
	경영학과	Felver Benjamin Troy	조교수	2014.3.1 ~ 2016.2.29 (2년)	
	문화콘텐츠학과	YAN KUI	조교수	2014.3.1 ~ 2015.2.28 (1년)	
	의 료 원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이 해 상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흉부외과학교실	박 성 용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정형외과학교실		정 남 수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안과학교실		이 기 황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 이상 본교 17명 / 의료원 4명 -

나. 재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교	대학원 NCW학과	이 태 공	대우교수	2014.3.1 ~ 2015.2.28 (1년)
	공공정책대학원	윤 영 식	대우부교수	2014.3.1 ~ 2016.2.29 (2년)

- 이상 본교 2명 -

다. 승진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기계공학과	박 진 일	교 수	2014.3.1 ~ 정년
	기계공학과	송 봉 섭	교 수	2014.3.1 ~ 정년
	교통시스템공학과	유 정 훈	교 수	2014.3.1 ~ 정년
	건축학과	차 희 성	교 수	2014.3.1 ~ 정년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험

이사

이 영 현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전자공학과	좌 동 경	교 수	2014.3.1 ~ 정년
	미디어학과	오 규 환	교 수	2014.3.1 ~ 정년
	미디어학과	이 경 원	교 수	2014.3.1 ~ 정년
	생명과학과	이 종 수	교 수	2014.3.1 ~ 정년
	경영학과	이 홍 재	교 수	2014.3.1 ~ 정년
	영어영문학과	강 지 혜	교 수	2014.3.1 ~ 정년
	영어영문학과	김 현 옥	교 수	2014.3.1 ~ 정년
	심리학과	신 강 현	교 수	2014.3.1 ~ 정년
	심리학과	신 희 천	교 수	2014.3.1 ~ 정년
교	법학전문대학원	권 건 보	교 수	2014.3.1 ~ 정년
	전자공학과	이 교 범	교 수	2014.3.1 ~ 정년
	심리학과	김 경 일	교 수	2014.3.1 ~ 정년
	건축학과	김 선 숙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건축학과	조 봉 호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문화콘텐츠학과	김 민 규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에너지시스템학과	김 환 명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의 료 원	생리학교실	이 수 환	교 수	2014.3.1 ~ 정년
	의료정보학과	박 래 응	교 수	2014.3.1 ~ 정년
	소화기내과학교실	정 재 연	교 수	2014.3.1 ~ 정년
	순환기내과학교실	황 교 승	교 수	2014.3.1 ~ 정년
	영상의학교실	강 두 경	교 수	2014.3.1 ~ 정년
	생리학교실	우 현 구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의료정보학과	이 기 영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소화기내과학교실	황 재 철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순환기내과학교실	양 형 모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종양혈액내과학교실	정 성 현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알레르기내과학교실	예 영 민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신경과학교실	문 소 영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외과학교실	김 구 상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정형외과학교실	조 재 호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정형외과학교실	이 두 형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신경외과학교실	임 용 철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안과학교실	양 홍 석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재활의학교실	윤 승 현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협

이사

이 영 현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응급의학과교실	김 기 운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직업환경의학교실	민 경 복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 이상 본교 20명 / 의료원 20명 -

### 제 13 호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본 안건은 과거 민자기숙사 신축계획을 취소하고 교비재원의 국제학사를 신축하게 됨에 따라 2007~08년 기 투입된 민자기숙사 설계용역비 554,500,000원을 대손상각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PF시장의 침체와 민자기숙사 선시행대학들의 사업 부진에 따라 정책연구 등을 통해 민자기숙사를 취소하고 교비로 진행되는 국제학사를 추진하여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경과 내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윤 성 복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찬성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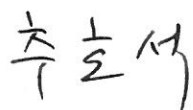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대손상각 처리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제 14 호 동아리실1·2·아향식당 멸실처분 및 카페테리아(가칭) 신축 승인(안)

이 사 장 : 동아리실1·2·아향식당 멸실처분 및 카페테리아(가칭) 신축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우선 동아리실1·동아리실2·아향식당 멸실 처분과 관련하여 교내 낙후된 노후 시설물(계단, 파고라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여 학생들에게 안락한 야외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공간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로 2014학

< 간서명 란 >

이사장 

이사 

이사 

년도 예산으로 3.2억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멸실 및 환경개선을 하고자하는 공간 중 일부에 건축면적 113평, 연면적 총 300평, 3개층 규모의 가칭 카페테리아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물로서 1층은 카페테리아, 2층·3층은 토론학습실 및 도서관 열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신축개요 및 총 사업비 규모, 위치, 도면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2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 성 복 : 신축건물의 원가산정시 철거비용 및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에 대해 어떻게 회계처리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철거되는 세 건물과 신축건물 간 범위가 상당히 넓어 원가로 산입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철거되는 건물은 손실로 처리하고 신축비용만을 감안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 신 상 협 : 철거시 학생자치공간은 다른 곳으로 옮길 여유가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 부분에 대해 학생들과 협의를 하였고, 학생자치공간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퇴실 또는 신·구학생회관 및 기타 학생공간으로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 박 상 일 :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주 인 옥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동아리실1·2·아향식당 멸실처분 및 카페테리아(가칭) 신축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동아리실1·2·아향식당 멸실처분 및 카페테리아(가칭) 신축(안)

▶ 동아리실1·2·아향식당 멸실처분				
구 분	동아리실1	동아리실2	아향식당	비 고
연면적	253.44㎡	264.96㎡	277.28㎡	
구조	조립식	조립식	조립식	
준공년도	1981년	1983년	1983년	
취득일자	06.3.27	06.3.27	06.3.27	
취득가액	136,350,720원	142,548,480원	159,436,000원	
주용도	교육연구및복지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협 이사 이 영 현

▶ 카페테리아(가칭) 신축(안)

가. 건축면적 113평 / 연면적 총 300평 규모 1개동 (3층)

공 사 명	아주대학교 카페테리아 신축계획(안)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아주대학교 내
건축면적	373.7㎡(113.0평)
연 면 적	991.4㎡(300.4평)
최고높이	12.2m
외부마감	24mm 복층유리, U글라스 등
구 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나. 1층 카페테리아(113평), 2층·3층 토론학습실 및 도서관 열람공간 (187평)

다. 실시설계를 통해 건물디자인(형태),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동 가능

라. 용도 : 교육연구시설

제 15 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기채 승인(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기채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국제학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신축공사비로 융자금 50억원을 기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입예정액 총 100억원 중 2013년 10월에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50억원 차입을 완료하였고, 본 내용은 2014학년도 융자금 기채를 하기 위한 승인요청으로서 자세한 기채 내역은 첨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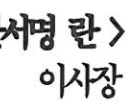


이 사 최 홍 : 기채 조건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기채 승인(안)은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이사  이사 

■ 사학진흥기금 기채 승인 내용

- |                      |                                |
|----------------------|--------------------------------|
| ○ 차입 내용 : 국제학사 신축공사비 | ○ 차입 예정액 : 50억원                |
| ○ 차 입 기 관 : 한국사학진흥재단 | ○ 금 리 : 4.0% (변동금리)            |
| ○ 상 환 재 원 : 교비회계     | ○ 상 환 기 간 : 10년 균등 상환 (분기별 상환) |

제 16 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이 사 장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편성은 국고 보조금 등 수입대응 지출 신규사업 반영, 기존 수입예산 실적 관리 및 미달성 수입예산 조정, 완료사업 및 취소예정·보류 사업 예산 반납, 차기이월자금 확정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제2차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4,278백만원이 증가한 247,4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적인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처장이 추경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전성훈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등록금 수입 감소 및 2013학년도 사업 중 차기년도로 이월될 사업(연구비, 국제학사 신축 등)에 대한 예산이 조정 반영된 것으로 1차 추경대비 운영수지가 59.6억원 개선되었으며 17억원을 순적립하는 예산(안)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난 이사회에서 기보고된 것 이후에 (주)아주투어 계약불이행 관련 내역(0.4억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주)아주투어 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학교 및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윤성복 :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등의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라 지출예산을 감소시킨 예산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선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을 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노석 이사 신상범 이사 이영현

▣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관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액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증감
수입	등록금수입	124,813	126,902	-2,089
	전입및기부금수입	77,823	72,290	5,533
	교육부대수입	11,625	11,735	-110
	교육외수입	3,176	3,551	-375
	투자외기타자산수입	8,582	7,803	779
	고정부채수입	5,570	5,030	54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5,903	15,903	0
	계	247,492	243,214	4,278
지출	보수	106,482	108,896	-2,414
	관리운영비	26,589	28,934	-2,345
	연구학생경비	67,682	66,424	1,258
	교육외비용	1,757	1,251	506
	자산취득	11,556	12,786	-1,230
	투자외기타자산지출	10,579	7,503	3,076
	고정부채지출	11,771	11,871	-100
	예비비	280	824	-544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0,796	4,725	6,071
	계	247,492	243,214	4,278

제 17 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의 편성 기본 방향은 2013.11.1. 실행예산 대비 10% 감액 편성(인건비, 용역비, 공과금, 장학금 제외), 대학중점 추진사업의 세부과제 실천을 위한 사업 방향 설정,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 추구, 사업별 재정성과지표 수립을 통한 성과중심 사업체계 구축, 중앙일보 대학평가 등 대외 평가대비 지표사업의 우선 배정, 수입구조 다변화를 통한 등록금 의존율 하향 추구, 전략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한 재정기반 마련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학년도 자금예산의 규모는 2013학년도 제2차 추경예산 대비 10,233백만원이 감소한 237,2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처장이 자금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감사 전성훈** : 아주대학교 본예산(안)은 총 예산규모는 2,372.6억원으로 전년대비 102.3억원이 감소한 예산(안)입니다. 운영수지가 102.7억원이며, 48.6억원은 순적립, 41.9억원은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등록금의 경우 학부는 전년대비 수업료를 0.4% 인하하였고 대학원은 동결(일부 특수대학원 제외)하였고 보수도 기본급을 동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외부환경에 따른 지출 삭감 노력에 대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특수대학원에서 수업료 인상에 따른 등록금수입 증가를 반영하였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수업료 인상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경영대학원의 자구노력과 IT융합대학원, 국제대학원 등 각 특수대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등록금 수입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박상일** : 학부생들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에 따라 지출예산 조정을 통해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윤성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을 하다.)

**이사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관별	2014학년도 예산액	2013 제2차 추경예산액	증감
수입	등록금수입	127,789	124,813	2,976
	전입및기부금수입	75,218	77,823	-2,605
	교육부대수입	12,315	11,625	690
	교육외수입	3,090	3,176	-86
	투자외기타자산수입	2,951	8,582	-5,631
	고정부채수입	5,100	5,570	-47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0,796	15,903	-5,107
	계	237,259	247,492	-10,233
지출	보수	110,926	106,482	4,444
	관리운영비	23,394	26,589	-3,195
	연구학생경비	72,326	67,682	4,644
	교육외비용	1,498	1,757	-259
	자산취득	14,639	11,556	3,083

<간서명란>

이사장

최호석

이사 신상행

이사 이영현

투자외기타자산지출	8,021	10,579	-2,558
고정부채지출	1,675	11,771	-10,096
예비비	593	280	313
미사용차기이월자금	4,187	10,796	-6,609
계	237,259	247,492	-10,233

### 제 18 호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아주대학교 2013학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본교의 고정자산 대상수량은 총 120,436점에 취득금액 102,825,687,948원으로 이 중 불용품은 8,105점에 장부가 4,381,846,639원으로 조사되어 해당 고정자산을 불용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번 불용자산은 교육용 기계기구가 약 73%, 교육용 집기비품이 약 11%로서 대부분이 노후로 인한 사용불가이며 기타 고장, 소모, 부속성으로 인한 불용처분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최 홍 :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불용처분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제 19 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발의.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 중 2014.2.28자로 임기만료 예정인 의료원장, 보건대학원장, 법과대학장, 약학대학장, 보직 사임서를 제출한 의무부총장, IT융합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총무처장, 현재 공석상태인 기초교육대학장의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학교

< 간서명란 >

이사장

최 호 석

이사

신 상 협

이사

이 영 현

장의 제청을 받아 의무부총장·의료원장에 의학과 유희석 교수, 보건대학원장에 의학과 전기홍 교수, IT융합대학원장에 전자공학과 윤원식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에 법학전문대학원 최진안 교수, 약학대학장에 약학과 이범진 교수, 기초교육대학장에 사학과 김태승 교수, 총무처장에 건축학과 김정래 교수를 임명하고자 동의를 요청 드립니다.

( 참석임원 첨부된 별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 성 복 : 의무부총장과 의료원장으로 현재 병원장이신 유희석 교수를 임명하고자 하시는데, 그러면 병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사 장 : 병원장 보직임기 만료가 2014.8.31까지로 그때까지 당분간 겸직으로 맡겨 드리하고자 합니다.

이 사 주 인 옥 : 이력사항을 살펴보니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2014.3.1부로 해당 보직교원에 대해 임명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보 직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임명요청일자	비 고
의무부총장	의학과(산부인과학교실)	교 수	유 희 석	2014.3.1부	신규(2년)
의료원장	의학과(산부인과학교실)	교 수	유 희 석	2014.3.1부	
보건대학원장	의학과(예방의학교실)	교 수	전 기 홍	2014.3.1부	신규(2년)
IT융합대학원장	전자공학과	교 수	윤 원 식	2014.3.1부	신규(2년)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최 진 안	2014.3.1부	신규(2년)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최 진 안	2014.3.1부	
약학대학장	약학과	교 수	이 범 진	2014.3.1부	연임(2년)
기초교육대학장	사학과	교 수	김 태 승	2014.3.1부	신규(2년)
총무처장	건축학과	교 수	김 정 래	2014.3.1부	신규(2년)

<간서명란>

이사장

이승호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제 20 호 교육용기본재산(장례식장 신축부지) 용도변경 승인(안)

이 사 장 : 교육용기본재산(장례식장 신축부지) 용도변경 승인(안) 발의.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 7월 경기남부권 권역외 상센터 설치기관으로 선정되어 설립부지를 검토하던 중 중증외상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여야 하는 특수성에 따라 병원동과 직접 연결되는 현재의 장례식장 부지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노후화된 장례식장을 멸실하고 새로운 부지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장례식장은 현재 교육용 기본재산(부속시설)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이고 지방세법상 용도구분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상 수익용 시설이므로, 신축되는 장례식장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여 장례식장 수익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학교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장례식장 신축부지를 교육용 기본재산(교지 및 부속토지)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안)은 작년 10월 제308차 이사회에서 기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할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재산의 관리 구분에 따라 수익용으로 전환되는 장례식장 부지에 대한 별도 필지 분할이 요구되었고, 필지분할을 위하여 지적도상 면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승인된 면적보다 증가하게 되어 다시 승인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필지분할 결과가 아직 지적도상에 반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신청면적인 1,877.29㎡를 기준으로 회의자료를 작성하였고 최종 확정면적은 약간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이사님들께서 지적도상에 반영되는 최종 분할면적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것으로 승인해 주신다면 추후 관할청에는 필지분할 후 새롭게 부여된 지번과 확정면적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할청의 용도변경 허가 후 교비회계로 보전되는 감정평가액 또한 최종 분할면적에 따라 변경이 되며, 회의자료에는 현재 분할 예정 면적인 1,877.29㎡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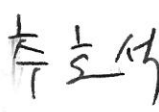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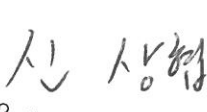

이 사 김 선 용 : 필지 분할에 따른 용도변경 면적이 변경되어 재승인 받는 실무적인 부분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추후 지적도상에 반영되는 최종 분할면적 및 해당 감정평가액으로 관할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의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 간서명란 >

이사장  이사  이사 

이 사 장 : 그러면 교육용기본재산(장례식장 신축부지) 용도변경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교육용 기본재산(장례식장 신축부지) 용도변경 내용

1. 용도변경 면적 (단위: 원)

구 분	소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토 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26-1, 산 26-9 중 일부	임야	1,877.29㎡	필지분할 진행 중

※ 필지분할 후 지적도상 신규지번 부여 예정이며, 용도변경 대상 토지면적(분할면적)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2. 용도변경 : 교육용 기본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3. 교비회계 보전금액 : 용도변경 대상 토지면적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 토지분할 결과에 따른 용도변경 면적 확정 후 감정평가 시행, 이에 기준하여 교비회계 보전금액도 결정 예정

▶ 예상 감정평가 금액 (2014.2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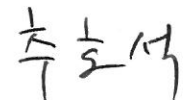


구 분	예상 감정평가액	교비회계 보전금액	비 고
금 액	780,952,640원	780,952,640원	1,877.29㎡ 기준 (416,000원 / ㎡)

▶ 교비회계 보전재원 : 법인 운영자금

제 21 호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수익용기본재산(기금) 처분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 영 현 : 앞서 심의한 안전과 관련하여 장례식장 신축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기금)을 처분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전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향후 저금리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소득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적절한 운영수익 확보를 위하여 본 법인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중 기금을 처분하고 장례식장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금성 상품으로 예치되어

<간서명란> 이사장  이사  이사 

있는 기금에서 장례식장 공사비상당액을 대체 취득한 후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예금성 상품으로 재예치하고자 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기금) 처분예정금액 및 용도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4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앞서 심의한 안건의 연결선상으로서 장례식장 신축 재원 활용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인 기금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수익용 기본재산(기금) 처분(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수익용 기본재산(기금) 처분 내용

1. 매각처분 대상 예금계좌 현황 (단위 : 원)

기 관 명	계좌번호	예 치 일	만 기 일	이자율	금 액
씨티은행	321-01041-342-01	2013.11.04	2014.05.07	2.78%	5,000,000,000
기업은행	336-068956-12-008	2013.10.18	2014.06.18	2.85%	7,000,000,000
기업은행	336-068956-12-009	2013.12.10	2014.12.10	2.93%	2,000,000,000
기업은행	336-068956-12-010	2014.01.22	2015.01.22	2.82%	1,900,000,000
합 계 액					<u>15,900,000,000</u>

2. 수익용 기본재산(기금) 처분예정금액 및 처분금의 용도

- ▶ 처분예정금액 : 15,900,000,000원
- ▶ 처분금의 용도 : 수익용기본재산(예금)인 상기 계좌 만기 도래액 중 장례식장 신축 공사비 상당액 대체취득(112.8억원) 및 차액 예금성 상품 재예치(46.2억원)

※ 신축공사비 상당액(대체취득)은 예정금액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 22 호 수익용기본재산(군산빌딩) 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수익용기본재산(군산빌딩) 처분 승인(안) 발의.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상임이사 이영현** : 본 부동산은 1997.7월 본 법인에서 신축하여 스마일저축은행(구 한일 상호저축은행)과 일신학원에 임대 운용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현재 주 임대처인 스마일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 결정에 따라 2014.2.28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며, 일신학원 또한 연장계약이 되지 않아 동일 날짜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군산빌딩이 위치한 지역은 구도심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임대료가 낮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임대 자체가 불투명하여 장기간 공실이 예상됩니다. 이에 건물전체 공실위험부담을 유지한 채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정기예금 등)으로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윤성복** : 안정적인 정기예금 등의 수익용 재산으로 대체 취득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주인욱**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장** : 그러면 수익용 기본재산(군산빌딩) 처분(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수익용 기본재산(군산빌딩) 처분 내용**

<b>1. 매각처분 대상 부동산 현황</b>					
소재지	구분	전체면적	장 부 가	'13년 공시지가 '13년 과세시가	탁상감정액 ( '14.1)
전북 군산시 중앙로3가 54-3	토지	1,987㎡ (601평)	1,166,779,530원	1,531,977,000원 (771,000원/㎡당)	1,780,000,000원
	건물	1,556.68㎡ (471평)	959,934,730원	613,331,920원 (394,000원/㎡당)	740,000,000원
	계		2,126,714,260원	2,145,308,920원	2,520,000,000원
<b>2. 처분예정금액 및 처분금의 용도</b>					
▶ 감정평가 : 추후 실시예정					
▶ 처분예정금액 : 추후 시행예정 감정평가금액 이상					
▶ 처분금의 용도 : 수익용기본재산(정기예금 등) 대체취득					

<간서명란>

이사장 **추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제 23 호 2013학년도 법인회계 제3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이 사 장 : 2013학년도 법인회계 제3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법인회계 제3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제2차 추경예산 대비 775백만원 증가한 18,69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부속병원 전입금 수입 증가 및 이에 따른 경상비 전출 반영, 장례식장 신축에 따른 고정자산매입 지출 등이 되겠습니다.

( 이영현 상임이사가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전 성 훈 : 법인회계 제3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와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3학년도 법인회계 제3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3학년도 법인회계 제3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액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액	증 감
수 입	전 입 금 수 입	5,687	4,957	730
	기 부 금 수 입	65	20	45
	예 금 이 자 수 입	2,400	2,400	0
	수 익 재 산 수 입	1,757	1,757	0
	잡 수 입	1	1	0
	고정자산매각대	2,102	2,102	0
	고정부채입금	175	175	0
	전기이월자금	6,505	6,505	0
	계	18,692	17,917	775
지 출	보 수	593	586	7
	관 리 운 영 비	1,099	1,135	-36
	지 급 이 자	37	36	0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법정부담전출	5,562	5,648	-86
경상비전출	2,075	1,207	868
예비비등	101	101	0
기금적립	2,158	2,159	0
투자자산지출	50	50	0
고정자산매입비	320	150	170
고정부채상환	782	782	0
차기이월자금	5,915	6,063	-148
계	18,692	17,917	775

## 제 24 호 2014학년도 법인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법인회계 자금예산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2014학년도 법인회계 자금 예산(안)의 주요 편성은 전입 및 기부금 수입의 감소, 저금리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감소, 법정부담전출 증가 및 경상비 전출 감소, 전년 대비 부동산 매각대 기금 대체취득 감소에 따른 기금적립 감소, 장례식장 신축 공사비 및 전산개발에 따른 자산매입비 증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금 예산(안)의 규모는 2013학년도 3차 추경예산 대비 3,597백만원 감소한 15,095백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주요 편성내용은 첨부된 자료 4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현 상임이사가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전성훈 : 안정적인 재정유지를 위한 수익사업 확대가 반영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 외에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최홍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주인욱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법인회계 자금예산(안)에 대하여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최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 2014학년도 법인회계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관별	2014학년도 예산액	2013 제3차 추경예산액	증감
수입	전입금수입	4,867	5,687	-820
	기부금수입	20	65	-45
	예금이자수입	2,130	2,400	-270
	수익재산수입	1,837	1,757	80
	잡수입	1	1	0
	고정자산매각대	0	2,102	-2,102
	고정부채입금	325	175	150
	전기이월자금	5,915	6,505	-590
	계	15,095	18,692	-3,597
지출	보수	670	593	77
	관리운영비	910	1,099	-189
	지급이자	33	37	-4
	법정부담전출	5,815	5,562	253
	경상비전출	998	2,075	-1,077
	예비비등	201	101	100
	기금적립	55	2,158	-2,103
	투자자산지출	0	50	-50
	고정자산매입비	1,195	320	875
	고정부채상환	315	782	-467
	차기이월자금	4,903	5,915	-1,012
	계	15,095	18,692	-3,597

제 25 호 2014학년도 상근임원 보수채정 승인(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상근임원 보수채정 승인(안) 발의.

<간서명란>

이사장

최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 2014학년도 상근임원 보수 책정(안)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10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선 용 : 이사장님과 이영현 이사님 그리고 신상협 이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석이사 9인 전원이 김선용 이사의 의견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을 참석임원의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신 상 협 이사 이 영 현



## 10. 폐회선언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10차 이사회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 11시 1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

2014 년 2 월 6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 호 석
이 사	윤 성 복	윤 성 복
이 사	문 길 주	문 길 주
이 사	주 인 옥	주 인 옥
이 사	박 상 일	박 상 일
이 사	신 상 협	신 상 협
이 사	이 영 현	이 영 현
이 사	최 홍	최 홍
이 사	김 선 용	김 선 용
감 사	전 성 훈	전 성 훈
감 사	배 홍 기	배 홍 기